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 부적정

관계기관 향동숲내초등학교

내 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며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향동숲내초등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시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여야 하나, 임의로 위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향동숲내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소홀

관계기관 향동숲내초등학교

내 용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실이 벽·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도별 실별 방화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향동숲내초등학교에서는 2020년 ~ 2022년의 3개년에 걸쳐 각 실별 방화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향동숲내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4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시설계약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향동숲내초등학교

내 용

1. 공사용 공공요금 미 징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 개선방안 알림(경기도교육청 시설과-14334(2008.12.15.)호)」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기준은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전월 또는 전년도 사용량 비교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전기 및 수도 사용료 분석 결과 공사금액 대비 0.11%~0.14%사용)

그런데도 향동숲내초에서는 2021학년도 학교공간혁신(다모임터, 도서실) 환경개선 공사(계약금액 25,720,000원)를 실시하면서 공사원가 계산서에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학교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36,000원을 징수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공공요금 미징수 내역

(단위:원)

회계연도	구분	건명	계약체결현황				비고
			계약금액	대금 지급일	지급액	공공요금 세입조치 필요액 (0.14%)	
2021	공사	학교공간혁신(다모임터, 도서실) 환경개선 공사	25,720,000	2021-09-06	25,720,000	36,00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에 제3조(적용범위), 「경기도교육청 공사원가 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향동숲내초등학교에서는 아래 [표2]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업비 미계상 현황

연도	공사명	총공사금액 (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비고
2021	학교공간혁신(다모임터, 도서실) 환경개선 공사	25,720,000원	

【조치할 사항】

- ① 향동숲내초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1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